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교원 신규채용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원임용규정 제3장 제16조 내지 18조에 의거 교원 신규채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우수한 산학협력교원 채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산학협력교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충원) ①대학(원) 또는 기관의 장은 관련학부(과) 및 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총장에게 산학협력교원 충원을 요청한다.

②충원대상 학부(과), 기관 및 인원은 총장이 결정한다.

③총장은 충원요청을 한 경우 이외에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원대상 학부(과), 기관 및 인원을 정할 수 있다.

④산업체 경력 및 산학협력 능력이 우수한 전문경력인사를 특별채용 할 경우엔 제5조 내지 제10조의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4조(공고) 공채를 통한 신규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·채용인원·지원자격·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서 접수) ①산학협력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자는 접수기한 이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터넷(본교 홈페이지)으로 접수(입력)하여야 한다.

1. 산학협력교원초빙지원서(별지서식 1)
2. 산업체경력사항(별지서식 2)
3. 산학협력활동 계획서(별지서식 3) : A4 3매 분량
4. 연구실적 목록(별지서식 4)

제6조(심사절차) ①산학협력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원자격심사
2. 서류심사
3. 학과 면접심사
4. 본부 면접심사
5. 교원인사위원회 심의

제7조(지원자격심사 및 실적물 접수) ①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지원자격(학력, 경력 등)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지원자격을 “可”로 한다. 이때 심사결과 보고서는 「교원신규채용 지원자격심사표」(별지서식 5)에 의한다.

②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, 연구처장, 교무학사부장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③지원자격심사 통과자가 3인 미만인 분야는 원칙적으로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④지원자격심사 통과자는 소정기한 이내 아래 각 호의 실적물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. 단, 우편물은 기한 이내 도착분에 한한다.

1.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2. 경력증명서 각 1부
3. 전공관련 자격·면허증 사본 각 1부
4. 연구 및 산학 실적(물)중 대표실적 3편

제8조(서류심사) ①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근거로 지원자의 학력, 산업체경력 및 연구실적 등 지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.

②심사위원은 해당 학부(과) 또는 기관 교원 2인 이상으로 한다. 단, 전공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부는 전공교수만 심사에 참여한다.

③지원서 입력착오, 허위입력 등으로 인하여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.

④서류심사는 「산학협력교원 서류심사조서」(별지서식 6)에 의한다.

제9조(면접대상자 선정) 서류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며 면접대상자는 초빙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한다. 단,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초빙분야는 2배수 이내로 한다.

제10조(학과면접심사) ①면접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결과를 기초로 한다.

② 면접심사위원은 학부(과) 소속 교원 또는 기관소속 교원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교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. 단, 전공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부는 전공교수만 심사에 참여한다.

③ 면접심사는 「학부(과) 면접심사조서」(별지서식 7)에 의한다.

④ 면접심사에 불참한 자는 신규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1조(본부면접심사) ①본부면접심사위원은 총장, **부총장**, 대학원장,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본부면접심사는 「본부 면접심사조서」(별지서식 8)에 의한다

제12조(제청예정자 결정) ①총장은 서류심사, 학부(과)면접심사, 본부면접심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배수의 범위내에서 제청예정자를 선정한다. 심사별 반영비율은 서류심사 40%, 학부(과)면접심사 30%, 본부면접심사 30%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3조(경력환산) ① 산학협력교원의 산업체 경력은 민간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에 한해 100% 인정한다. 단 비전임은 70%로 환산한다.

② 경력연수는 학사학위 취득 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취득 후부터 계산한다.

③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교원의 경우 석사 학위취득자는 2년, 박사학위 취득자는 석·박사과정을 합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.

제14조(직급 부여) 임용직급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.

제15조(심사결과 공개) 산학전담교원채용심사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한 자가 심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」 또는 본 대학교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. [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6항]

제16조(보칙) ① 산학전담교원채용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임용규정, 산학협력교원임용규정, 교원특별채용 지침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1]

산학협력교수초빙지원서

지원분야	학부(과) :	분야명 :	성명	(인)
------	---------	-------	----	-----

(사 진) 반명함판 (3cm×4cm)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)	성명 (한자)					생년월일	
	현주소	(우 : -)				국적	
	연락처	자택 ()	직장 ()		휴대폰		
	병역관계	필 () 미필 () 면제 () 여자 ()	면제 사유		E-mail		

학 력 사 항

구 분	재학기간(년월일)	학 교 명	학과(부)명	진 공	학위명	학위 취득일
고등학교	 -		*	*	*	
학 사	 -					
석 사	 -					
박 사	 -					

전공관련 자격·면허증

상 별

취득년월일	종 류	시행기관	년 월 일	종 류	수여기관
. . . .					
. . . .					
. . . .					

[별지서식2]

산업체 경력사항

지원분야	학부(과) :	분야명 :	성 명	(인)
------	---------	-------	-----	-----

기 간	근무년수	환산 비율	근 무 처	직위(명)	담당직무
~	년 월				
~	년 월				
~	년 월				
~	년 월				
~	년 월				
~	년 월				
~	년 월				
~	년 월				
~	년 월				
~	년 월				
~	년 월				
~	년 월				
~	년 월				
~	년 월				
~	년 월				

- ※ ①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종사한 경력을 말함
 ② 경력사항은 관련 증명서가 모두 첨부되어야 함

[별지서식3]

산학협력활동계획서

지원분야	학부(과) :	분야명 :	성명	(인)
------	---------	-------	----	-----

(※ 자유 형식으로 A4 3장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.)

연구실적목록

지원분야	학부(과) :	분야명 :	성명	(인)
------	---------	-------	----	-----

1. 학위논문(석·박사학위논문)

순번	구분	논문제목	학위취득일

2. 연구실적

- 학술논문(국제·국내저명학술지만 작성)

순번	구분	논문제목	발표 년월	연구자수 (본인포함)	역할		게재학술지			
					책임	공동	학술지명	집	권	호

- 학술저서(역서, 편저서, 창작집, 학술자료집, 비매품, 개정판은 제외)

순번	구분	저서명	발행 년월	저자수 (본인포함)	역할		발행처	지면수
					책임	공동		

- 실기실적(예·체능계 전시 및 발표실적)

순번	구분	작품명 / 종목·수상	전시 및 발표회 명/ 대회명	발표(대회) 년월일	연구자수 (본인포함)	역할		발표(대회) 장소
						책임	공동	

※ 최근 3년간(접수마감일 기준) 업적으로써, 연구실적물중 대표실적 3편만 제출함.

[별지서식5]

교원신규채용 지원자격심사표

대학

학부(과) 초빙분야:

순 번	성 명	지 원 자 격		심사결과
		최종학위	산업체 경력	

※ 산업체 경력은 초빙분야의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지원자격임.

위와 같이 지원자격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심사위원장 (인) 심사위원 (인) 심사위원 (인)
심사위원 (인) 심사위원 (인)

교원신규채용 서류심사표

성명		생년월일	
지원분야	대학 학부(과) 분야명 :		

심사항목	배점	심 사 기 준	평 가 척 도		평 점
초빙분야 일치 여부 심사	30	1. 초빙분야와 전공일치여부 2. 초빙분야와 현장실무 경력의 일치여부	매우우수	25 ~ 30	
			우수	19 ~ 24	
			보통	13 ~ 18	
			미흡	7 ~ 12	
			매우미흡	0 ~ 6	
산업체 근무경력	30	1. 근무기간 및 직급 2. 산업체 현장실무경력의 우수성	매우우수	25 ~ 30	
			우수	19 ~ 24	
			보통	13 ~ 18	
			미흡	7 ~ 12	
			매우미흡	0 ~ 6	
산학협력활동	40	1. 산학협력활동의 우수성 2.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능력 3. 취업, 창업, 현장 연계형 강좌 강의 능력	매우우수	33 ~ 40	
			우수	25 ~ 32	
			보통	17 ~ 24	
			미흡	9 ~ 16	
			매우미흡	0 ~ 8	
합 계					

※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.

위와 같이 심사하였음.

년 월 일

심사위원:

(인)

본부 면접심사조서

면접대상자 인적사항	성 명		생년월일			
면접대상자 학과(부)/기관						
심 사 내 용	평 가					비 고
	수 (5점)	우 (4점)	미 (3점)	양 (2점)	가 (1점)	
1. 교수로서의 자질 및 인품 (가치관, 태도, 친화성, 의사표현능력)						
2. 본교에 대한 인식과 이해정도						
3. 미래지향적 산학협력 역량						
4.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 예상도						
5.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(창의성, 실천의지)						
6. 개인적 특성 (사명감과 교육관, 정직성과 청렴도)						
합 계	점					
평가의견						

※ 면접심사위원당 1부씩 작성함.

※ 평가는 해당 점수에 ○표하고, 합계는 평가점수의 합으로 기입함.

※ 평가의견은 세부적으로 작성함.

위 와 같 이 심 사 하 였 음.

년 월 일

심 사 위 원 :

(인)